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9
----------	-----

발의연월일 : 2026년 2월 25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를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 나. 일본식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3. 3. ~ 2026. 3.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얻어”를 “받아”로, “행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사무중”을 “행정사무 중”으로, “행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의 발의”를 “제1항에 따른 조사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수”를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외”를 “그 밖”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감사·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을 “(감사·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하고자 할 때”를 “수집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한”을 “요구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로, “경과 와”를 “경과와”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를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u>행한다</u>.</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제1차</u>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u>얻어</u>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u>행한다</u>.</p> <p>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u>행정사무중</u>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u>행할</u>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u>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감사) ① ----- ----- ----- ----- ----- <u>실시</u> <u>한다</u>.</p> <p>② ----- <u>제2차</u> ----- ----- ----- <u>받아</u> - ----- <u>실시</u> <u>한다</u>.</p> <p>제3조(조사) ① ----- ----- ----- <u>행정사무 중</u> ----- ----- ---- <u>실시할</u> -----.</p> <p>② <u>제1항에 따른 조사발의</u>----- ----- ----- -----.</p>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생략)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보조)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감사·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위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③ ----- 제2항-----

제4조(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사 하거나 조사할 때 -----

제7조(사무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

③ ----- 그 밖-----

제8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 수집하려는 경우-----

언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
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
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감사·조사결과보고) 영 제
52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
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
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
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
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성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

② -----
요구했을 -----
-----.

③ -----

--- 따라야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조사결과보고) 「지
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2조-----
----- 경과와 -----
----- 첨부해야 -----.

제10조(징계) -----

-----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
구의회 회의규칙」에서 -----
-----.

제11조(준용규정) -----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
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

의원발의 조례안 종합검토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조례안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조문개정 <input type="checkbox"/> 조문내용 - (목적)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 일본식 표현 및 자구 정비		
관련 법 조 항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소요예산	<input type="checkbox"/> 없음		
부서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검토사항 있다 없다	기타의견
	1. 이미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지?	√	
	2. 발의된 조례안이 행정이나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3. 사업(정책)집행, 예산, 효과 등에 대한 검토여부?	√	
	4.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5.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	
	6. 집행기준 및 행정절차 등이 불투명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지?	√	
	7.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	
	8. 기타 법률적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	√	
종합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종합검토 의견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조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3억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이해도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의회사무국장 박홍진